

감정평가서

건명	박재환 소유물건(2025타경1668(2))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오재홍
감정서번호	HS260309-03-101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효산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선박)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유일용




(주)효산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사장 조항필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이억삼천칠백삼십칠만일천팔백원정(₩237,371,8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오재홍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3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재환 (2025타경1668(2))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어선원부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12.15	2025.12.15	2026.03.17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선박	1척	선박	1척	-	77,371,800
	제시외 어업허가권	(1식)	제시외 어업허가권	1식	-	16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37,371,8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조항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4-14번지 인천수협연안공판장 앞 부두에 정박중인 선박(동력선 유성15호, 9.77톤, 어선번호: 0102014-6287207)으로 인천지방법원의 소형선박 임의경매(2025타경 1668)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대상물건의 개요

아래 "선박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참조.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의 결정 및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함.

나.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격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인일 2025년 12월 15일로 하였음.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대상 물건의 존재 여부,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제반 가격형성요인의 조사 및 가격산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 등을 수집하였음.

6. 그 밖의 사항

- 1) 본건 선박의 종류와 명칭, 어선번호, 선체의 재질 및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마력수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 등에 의거하였음.
- 2) 본건 선체 및 기관의 평가는 재질 및 구조,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법을 병행하였음.
- 3) 본건 선박의 기관은 현장조사상 제원 확인이 곤란하여 어선원부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참여시 참고 및 별도 확인이 요구됨.
- 4) 본건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의장품 등은 별도 목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였으며, 본건 선박에 거치 및 장착된 의장품 등의 기본설비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어선 운항에 필수적인 부대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선체에 포함 평가하였음.
- 5) 본건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 등은 물적특성상 정상적인 운항(작동)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참여시 참고 및 재확인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본건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 등은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한 물건 특성상 분실(도난), 멸실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경매 참여시 참고 및 재확인하시기 바람.

7) 본건은 귀 제시목록상 어업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련기관에 확인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을 득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항은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선박과 제시외 어업허가권에 대하여 일괄 매각이 요구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이론 등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본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본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본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본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본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 실무기준 640.3.3.(선박의 감정평가방법)

- ①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는 총 톤수, 기관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선박의 감가수정은 선체·기관·의장별로 정률법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관리상태·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4]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선박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 실무기준 650.2.3.1.(어업권의 감정평가방법)

- ①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본건 선박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 및 「**감정평가실무기준**」 등에 따라 선체, 기관, 의장품을 별도 구분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고 감가수정은 정률법으로 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이 발생된 점과 기준시점 당시의 현상 및 관리상태, 시장가치 등을 감안하고 장래 사용 가능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2) 본건 선박의 평가는 대상물건의 특성상 유사거래사례의 포착이 어렵고, 포착이 되더라도 포착된 사례와 개별요인 비교가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2항 단서 등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된 감정평가 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3) 제시외 어업허가권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조업의 경우 수익자료 포착이 용이하지 않고 조업시간 및 상황 등에 따라 수익성이 차이가 많은 반면 어업허가권의 가치가 어업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일정하게 형성되는 점을 참작하여, 방매사례, 호가수준 및 평가사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지침상의 폐업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거 대상물건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시산가액 비교 및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선박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대상 선박의 개요

[출처 : 어선원부 등]

어선번호	0102014-6287207	어선명칭	유성15호
조 선 자	보광FRP조선소	진수연월일	2001.02.16.
선박의 용도	어선	선 적 항	웅진군 영흥면
선 체	종류	재질	총 톤수(톤)
	동력선	FRP	9.77
			주요치수(m) 길이 : 14.40m 너비 : 4.10m 깊이 : 1.14m
기 관	종류	마력	비고
	선박용디젤	720	2015년 03월 04일 기관변경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선박 재조달원가 산정

가. 선박 신조단가

(1) 선체

1) 연안허가 어선

[출처 : 선박 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년]

구분		선질	건조원가(원)	비 고
연안허가어선	1톤 미만	FRP	14,000,000	선주옵선제외
	1톤~3톤	FRP	14,000,000 ~ 48,000,000	
	3톤~9.77톤	FRP	48,000,000 ~ 260,000,000	
	9.77톤~20톤급	FRP	260,000,000 ~ 550,000,000	

2) 업종에 따른 가중치

[출처 : 선박 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년]

구분	선질	가중치 부여	비 고
채낚기	FRP	기준 대비 20~30% 상향	구체적 옵션에 따라 차등 적용
자망		기준금액과 유사	
안강망		기준금액과 유사	
통발		기준 대비 10~20% 상향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기관

[출처 : 선박 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년]

선종	구분	단가 (원/PS)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47,000 ~ 275,000
	중, 저속	367,750 이하
보조기관 (Marine Diesel Engine)	국산 고속	88,000 ~ 184,000
	외산 중,고속	169,000 ~ 250,000

나. 유사선박 선체 감정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허가어업								
기호	용도	선질	총톤수(톤)	진수일	제조달원가 (단가)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기관(마력)					
가	어선	FRP	9.77	2014.08	선체 : 30,000,000/톤 기관 : 160,000/ps	2025.09.25	경매	-
			721					
나	어선	FRP	9.77	2004.06	선체 : 23,000,000/톤 기관 : 180,000/ps	2025.04.21	시가 참고	-
			635					
다	어선	FRP	9.77	2002.09	선체 : 26,000,000/톤 기관 : 110,000/ps	2025.10.17	담보	-
			6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제조달원가의 결정

제조달원가란 대상 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을 의미하며, 선박은 각기 상이한 선형과 규모, 구조 및 성능 등을 지니고 있어 정확한 선박 신조가격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한 "선박 감정평가 자료집" 및 유사 선박의 평가사례 등을 참고하고 가격 형성에 미치는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기호	구분	총톤수(톤)	선체재질	어선의 종류	내용년수	제조달원가 (원/톤)	비고
1	선체	9.77	FRP	동력선	20	30,000,000	-
	구분	기관의 종류 및 마력			내용년수	제조달원가 (원/PS)	비고
	기관	선박용디젤 / 720			20	200,000	-

※ 상기 선체 제조달원가는 선박 내 의장품을 포함하여 제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3.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회계상 내용연수, 관련업계에서 조사된 실질적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장래보존년수는 대상물건의 내용연수 범위에서 사용·수리의 정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래 사용가능한 기간을 말하며, 내용연수가 만료된 대상물건이 기준시점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경우에는 장래보존연수를 고려하여 관찰감가 할 수 있는바, 개보수 유무,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적용하였음.

최종잔가율은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만료 시 제조달원가에 대한 잔존가치의 비율을 의미함.

본건 선박의 감가수정은 선형 및 규격·구조·형식·재질·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매년 체감하는 선박의 잔존가치에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정률법", 잔존가치율 10%를 적용하였으며, 본건 선박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	구분	재조달원가 (원)	내용 년수	경과년수		잔존 년수	잔존 가치율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실제	유효					
1	선체	30,000,000	20	24	15	5	0.178 (5/20)	5,340,000	5,340,000	G/T (관찰감가)
	기관	200,000	20	10	15	5	0.178 (5/20)	35,600	35,000	마력당 (관찰감가)

※ 상기 기관의 적용단가는 백원 단위에서 절사하였음.

4. 선박가액의 결정

기호	구분	용량 및 수량	적용단가	결정가액(원)	비고
1	선체	9.77톤	5,340,000	52,171,800	의장품 포함.
	기관	720마력	35,000	25,200,000	-
합 계(원)				77,371,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제시외 어업허가권

1. 본선의 어업허가 내용

어업허가내역					
종류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 어구명칭	조업구역/ 어업의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주어업	응진 연안자망어업 제2024-00048호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안 일원 01.01~12.31	수산동물 (포함:쥐노래미, 우럭,암꽃게)
그외의 어업	응진 연안복합어업 제2024-00080호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안 일원 01.01~12.31	수산동물(포함:쥐노 래미,우럭)
허가기간		2024.01.01 ~ 2028.12.31			

2.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기준가격(2025년 기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단위 : 천원)

업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연안어업	복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통발	25,554	31,714	41,219	41,219	87,847
	자망	25,022	31,580	41,563	41,563	59,338
	선망	29,414	43,376	56,416	69,436	81,972
	조망	15,324	19,039	45,529	45,529	45,529
	들망	59,042	59,042	59,042	59,042	91,574
	연안개량 안강망	51,020	57,770	71,916	78,056	78,05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유사 선박의 어업허가권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허가어업							
기호	용도 (명칭)	허가권의 종류	총 톤수(톤)	감정평가액(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비고
a	어선 (수원호)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9.77	130,000,000	2025.06.23	경매	-
b	어선 (만해108호)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9.77	150,000,000	2024.08.07	경매	-
c	어선 (명성호)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9.77	200,000,000	2023.11.14	경매	-
d	어선 (삼영호)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9.77	140,000,000	2023.03.10	경매	-
e	어선 (자이언트호)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9.77	150,000,000	2023.06.02	경매	-
f	어선 (해성호)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9.77	160,000,000	2023.06.08	경매	-
g	어선 (수원호)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9.77	180,000,000	2023.07.28	경매	-
h	어선 (보경호)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9.77	180,000,000	2023.09.12	경매	-

※ 상기 감정평가액은 선체 및 기관, 의장품을 제외한 어업허가권만의 감정평가액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제시외 어업허가권 평가액의 결정

어업허가권은 어업규모, 어업종류, 어업시기 등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며, 거래 당사자간의 협상력 차이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큰 특성이 있어 객관적인 거래사례의 포착에 한계가 있는 바, 인근해 어선 감척사업지침상의 폐업지원금, 유사 어업허가권의 평가사례 및 탐문조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구분	선명	허가 어업의 종류	결정가액(원)
㉠	유성15호	연안자망어업(주어업)	160,000,000
		연안복합어업(그 외의 어업)	

V.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선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제반 법령 등과 선박의 종류, 선령, 선질, 총톤수, 현상 및 관리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원가법에 의한 선체(의장품 포함) 및 기관의 합산가액은 동종 및 유사 선박의 평가 사례 및 최근 중고선박의 시세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대상 선박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	종류	구조, 규격	수량 (톤/마력)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1	선체	동력선(FRP)	9.77톤	5,340,000	52,171,800	관찰감가
	기관	선박용디젤	720마력	35,000	25,200,000	관찰감가
	의장품	-	7식	-	선체에 포함	-
소 계					77,371,800	-
제시외어업권㉠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1식	-	160,000,000	제시외
소 계					160,000,000	-
합 계					237,371,800	-

끝.

선박 감정평가명세표

선박명칭	유성 15호	선박번호	0102014-6287207	선 적 항	웅진군 영흥면
구 분	적재용량 및 수량	평 가 액		산 출 근 거	
		단 가	금 액		
선 체	9.77 G/T	5,340,000	52,171,800	30,000,000*0.178(5/20)	
기 관	720 PS	35,000	25,200,000	200,000*0.178(5/20)관찰감가	
의 장 품	7 점	-	-	선체에 포함	
합 계			₩77,371,800.-		
선 박 의 내 용					
선 체	종 류	동력선	선 형	-	
	용 도	어선	총 톤 수	9.77 G/T	척 도 길이 :
	등 급	-	순 톤 수	- N/T	폭 :
	선 질	FRP	적화톤수	- DWT	높이 :
	선 창	-	조 선 소	보광FRP조선소	
	객 실	-	건조년월일	-	
승무원실	-	진수년월일	2001.02.16		
조 선 지	경기도 시흥시		비 고 의장품 선체에 포함 평가함.		
기 관	종 류	선박용디젤	기 통 수	- CYL	제 작 소
	실 마 력	720 PS	회 전 수	- RPM	-
	공칭마력	- PS	기 통 경	- m/m	제 조일자 및 번호
	형 식	-	행 정	- m/m	-
관	속 력	- Knots	보조기계 및 기관의종류와 수량		비 고
	추진기의 종 류 및 수 량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①	어군탐지기 모델명 : HDS9(Gen2 touch) Display : Widescreen, 16:9. WVGA TFT LCD Resolution : 800 × 480 Power Output : RMS(PTP) : Max 500W RMS Operating Frequency : (50/200 or 83/200khz)+455/800khz Languages : 36 total, available on 5 language packs Media Port : 2SD(full size) Power Consumption : 15.6W(1.2A@13V DC) Power Supply(Supply Voltage) : 12V DC(10.8-17.0V DC min-max) 그 외 기타 부대설비 포함.	LOWRANCE 제작일자 미상	(1식)	-	선체에 포함.	
②	선박자동식별장치 Class B AIS 플로터(국내연안용) 모델명 : AIS-50N 화면 : 5.6인치, TFT COLOR LED 사용전압 : 10 to 34V DC 사용전류 : 13.8V 일련번호 : 1204559 그 외 기타 부대설비 포함.	삼영이엔씨(주) 2011.02	(1식)			
③	어선종합관제시스템(V-PASS) 모델명 : SPA-900D 화면 : 7인치, TFT COLOR 외부 IF : SD Card(1~16G 지원) 공급전압 : 9~35V DC 소비전류 : 12V(0.4A)/24V(0.3A) 부저출력 : 68dbd 이상 일련번호 : 17M4204 단말기번호 : 33200051 그 외 기타 부대설비 포함.	삼영이엔씨(주) 2017.12	(1식)			
④	MARINE RADER	삼영이엔씨(주)	(1식)			

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모델명 : SMR-1206 표시부 : 12.1인치 컬러 LCD, 수직표시 표시부 해상도 : 800 × 600 지시방식 : 레스터 스캔방식 거리단위 : 6KW 0.0625~72NM 소비전력 : 60W/85W 공급전원 : DC 12/24V -10/+30% 일련번호 : 23D2150 그 외 기타 부대설비 포함.	2023.04				
⑤	3D GPS 플로터 모델명 : N120 화면 : 12"LED 백라이트 수신 채널 및 추적 위성 : 50채널 16위성/디지털16채널 다중 추적 유형 공급전압 : 11~35V DC 40W 일련번호 : 3C04358 그 외 기타 부대설비 포함.	삼영이엔씨(주) 2013.12	(1식)			
⑥	SSB무선송수신기 모델명 : SRT-350 주파수 범위 : 송신:1.6Mhz~27.99995Mhz(100Hz STEP) 수신:500Khz~29.9999Mhz(100Hz STEP) 통신방식 : 단신 및 반복신 사용채널 : 500COSJF 전원 : DC 24V ±15% 그 외 기타 부대설비 포함.	삼영이엔씨(주) 제작일자 미상	(1식)			
⑦	무선전화장치 모델명 : STR-6000B 송신 주파수 범위 : 156.025~157.425Mhz 수신 주파수 범위 : 156.050~163.275Mhz 통신방식 : 단신 및 반복신 사용채널 : 183채널 전파형식 : FM(16K0G3E), DSC(16K0G2B) 주파수 안정도 : ±10ppm	삼영이엔씨(주) 제작일자 미상	(1식)			

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 칭 (종 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 작 (취 득) 일 자 수 입 신 고 일 자	수 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공급전원 : DC 13.6V 25W 전원부 공급전원 : 정격 DC 24V (DC 18~31.2V) AC 100~120V, AC 220~240V 그 외 기타 부대설비 포함.					
	합 계	이	하	여	백	W0.-

어업권감정평가명세표

순번	어업권의 표시	어장의 면적		평 가 가 액		비 고
		공부	사정	단 가	금 액	
	<제시외 어업허가권>					
㉠	어업허가권 1)주어업 허가번호 : 웅진 연안자망어업 제2024-00048호 어업의 종류 : 연안자망어업 조업의 방법 : 연안자망어업 조업구역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안 일원 어업의 시기 : 01.01 ~ 12.31 포획.채취물의 종류 : 수산동물(포함:쥐노래미,우럭,암꽃게)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2) 그 외의 어업 허가번호 : 웅진 연안복합어업 제2024-00080호 어업의 종류 : 연안복합어업 조업의 방법 : 연안복합어업 조업구역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안 일원 어업의 시기 : 01.01 ~ 12.31 포획.채취물의 종류 : 수산동물(포함:쥐노래미,우럭)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1식)	1식	-	160,000,000	
	합 계				₩160,000,000.-	
	이	하	여	백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4) 운항사항	(2) 기관의 현황 (5) 실사장소	(3) 의장품의 현황 (6) 기타 참고사항
(1) 선체의 현황	본건 선박은 2001년 02월 16일 진수된 9.77톤 FRP 동력선 "유성15호"로서, 외관상 현황 및 관리상태 등은 무난한 상태임.	
(2) 기관의 현황	본건 선박에 설치된 주기관은 720마력 디젤기관이며, 기준시점 당시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 참여시 유의 및 별도 확인이 요구됨.	
(3) 의장품의 현황	본건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은 본 선박 운항 및 어로활동 등에 필요한 기기 및 시설로서, 외관상 현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 참여시 유의 및 별도 확인이 요구됨.	
(4) 운항사항	본건 선박은 어선원부상 선적항은 "웅진군 영흥면"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항사항 등은 미상임.	
(5) 실사장소	본건 선박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4-14 인천수협연안공판장" 앞 부두 해상에 정박 중인 상태이며, 해당장소에서 대상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실사를 하였음.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4) 운항사항

(2) 기관의 현황
(5) 실사장소

(3) 의장품의 현황
(6) 기타 참고사항

(6) 기타 참고사항

- 검사유효기간 : 2021.02.20.~2026.02.19.임.
- 어업허가기간 : 2024.01.01.~2028.12.31.임.

광역위치도



위치도



사 진 용 지



본건 선박 전경



본건 선박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선박 선수 전경



본건 선박 선미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선박에 부착된 어선번호



본건 선박 기관 전경

사진용지



본건 선박 의장품① 전경



본건 선박 의장품② 전경

사진용지



본건 선박 의장품③ 전경



본건 선박 의장품④ 전경

사진용지



본건 선박 의장품⑤ 전경



본건 선박 의장품⑥ 전경

사진용지



본건 선박 의장품⑦ 전경



본건 선박 조타실 전경

사 진 용 지



의장품 기타 부대설비 전경